

마포구민의 흡연피해 구제를 위한 결의안

(이필례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20
----------	-------

발의년월일 : 2014. 2. 26.
발의자 : 이필례·정형기·윤동현
서종수·유동균·조영덕
김순금·조남진·차재홍
박영길·한일용·강성국
오진아·김수진·마동환
송병길·김효철·장영숙
의원(18명)

1. 주 문

- 가. 흡연은 국민보건을 저해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흡연으로 인한 진료비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어, 정부가 담배회사에 책임을 묻는 것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당연한 의무임.
- 나. 정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암 등 각종 질병의 원인 제공자인 담배회사에 사회적 책임을 묻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을 촉구함.
- 다. 마포구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금연구역 지정 및 관리를 철저히 하고, 금연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구민의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함.

2. 제안이유

- 가. 최근 흡연에 따른 진료비가 급증하고, 생명까지 잃는 등 사회적 비용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은 매우 부족한 실정임.
- 나. 이에 정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국민건강증진과 재정절감을 위하여 각종 질병의 원인 제공자인 담배회사에 실효성 있는 책임을 묻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강구할 것을 촉구함.
- 다. 마포구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금연구역 지정 및 관리를 철저히 하고, 금연교육 · 홍보 · 캠페인 등 금연운동을 적극 전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기 위함.

3. 이송처

보건복지부,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마포구민의 흡연피해 구제를 위한 결의안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전문가 그룹은 지난해 8월 “흡연의 건강영향 분석 및 의료비 부담”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 내용에 따르면 흡연자의 암 발생 위험도가 비흡연자에 비하여 평균 최대 6.5배 높았고, 특히 남성의 경우 후두암 6.5배, 폐암 4.6배, 식도암 3.6배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흡연으로 인한 공단의 진료비 지출은 2011년의 경우 35개 질환에서 약 1조 7천억원으로, 이는 전체 건강보험료의 3.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건강보험 재정악화와 건강보험료 인상의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흡연자는 담배 한 갑당 354원의 건강증진기금을 부담하지만, 담배 회사는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면서도 아무런 사회적·경제적 책임을 지지 않고 있어 최소한의 기업윤리조차 망각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미국은 46개 주정부가 직접 담배회사에 소송을 제기하여 1998년 11월 2,060억 달러(220조원) 배상에 합의하였으며, 캐나다는 담배회사를 상대로 ‘담배손해 및 치료비배상법’을 제정하여 지난해 5월 온타리오주에서 500억 달러(약 53조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받았다.

최근 우리나라로 공공기관으로는 처음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재정관리 책임자로서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의사를 밝히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 제36조제3항에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되어 있어, 국민의 보건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가 담배회사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한 의무임을 천명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증진과 재정절감을 위하여 암 등 각종 질병의 원인 제공자인 담배회사에 사회적 책임을 묻기 위한 모든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마포구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금연구역 지정 및 관리를 철저히 하고, 금연운동을 적극 전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2014. 2.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일동